

어촌어항법 제정(안) 주요 골자

1. 총칙-목적 및 용어 정의

어촌어항법은 어촌과 어항의 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다.

어촌은 '호소(湖沼)나 연안에 위치하는 마을 또는 어항의 배후에 위치하는 마을로서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마을'로 규정함으로써 사업 지역을 명확히 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어촌특성화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촌특성화사업은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및 당해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해 어촌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했다.

2. 어촌발전기본계획

어촌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어촌개발을 위해 10년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어촌 기초조사의 시행 조항을 신설하고 이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매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시 어촌개발사업과 어항개발사업을 연계하고 어촌발전기본계획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기본계획을 5년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어촌발전지역계획"

국가 어촌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어촌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국가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면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의 원활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발전지역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장·도지사는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4. 어촌종합개발계획

현재 시행중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법

에 체계화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수산업기반시설과 주민생활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되게 했다.

어촌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다른 관련 사업등과 연계,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당해 사업지역의 토지 및 연안해면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어촌종합 개발사업의 집행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된다.

5. 어업의 소득 창출을 위한 어촌특성화 사업 계획

어촌의 입지조건이나 자연경관, 특산물, 당해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업의 소득 창출을 위한 어촌 특성화사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 어촌특성화사업계획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집행주체는 시장과 군수로 했다.

6. 어항기능수요 변화에 대응

어촌관광수요 증대, 어항구역내의 유향수면 활용 등 최근의 어항기능 수요변화에 대응해 어항개발사업에 어항환경개선, 다기능 종합어항건설 등을 반영하고 관광어항구역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항개발사업의 종류에서도 어항환경개선사업을 신설 어항환경정비와 어항관광 여건 조성 사업등을 포함시켰다. 또 레저용 선박 수요에 맞추기 위해 관광어항구역의 설정을 신설했다.

어항 기본시설이외의 어촌관광레저 및 해역관리 등 어항의 종합기능성을 갖춘 다기능종합어항을 어항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해수인·배수시설, 화장실, 종묘생산 및 중간육성장 시설 등과 수역부도 어항시설에 포함시켰다.

7.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제도 도입, 위임사무의 지방이양 조치

어촌·어항의 개발촉진을 위해 민간투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어항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사용수익권을 재산으로 인정, 물권으로 활용해 투자비 회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어항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한다.

또 현재 어항법상 위임조항에 의거 자치단체 등에 위임돼 있거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대상 사무로 확정된 각종 사무에 대해 이양조치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허가를 시장·군수에게 이양함에 따른 "어항관리자"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8. 한국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협회"로 개칭

한국어항협회를 어촌·어항법에 맞춰 '한국어촌어항협회(가칭)'로 개칭해 어촌·어항개발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능과 역할을 높였다.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국가 위탁사업으로 "어항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어촌·어항개발의 핵심적 주체로 양성한다.

〈각종 계획 및 사업체계도〉

